
2025년도 위탁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중유럽 지역 금융시장 및 금융환경 심층조사』

2025. 5.

해 외 금 용 협 력 협 의 회

I 과업개요

1. 과업명 : 「중유럽 지역 금융시장 및 금융환경 심층조사」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3. 사업목적 : 중유럽 주요 국가의 금융시장 구조, 정책·규제 환경,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현지 진출 가능성과 협력사업 발굴에 활용
4. 사업예산 : 금 사천만원정(₩4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II 추진 일정

- 2025. 5. 23(금) : 입찰 공고
- 2025. 5. 30(금) : 입찰 마감(연구계획서 접수 15:00까지)
- 2025. 6. 2(월) : 제안발표회(추후발표)
- 2025. 6. 5(목) : 계약진행

III 공모 참여방법

1.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금융회사, 공공금융기관, 정부 등으로부터 금융정책, 금융산업, 민간 및 공공금융회사(기관) 경영 관련 4,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자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등록을 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입찰서 제출

- 제출시한 : 2025년 5월 30일(금) 오후 3시
- 제출처 :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8층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 제출방법 :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직접 방문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명	부수	비 고
입찰참가신청공문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참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확약서	1부	<서식2> 참조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장 - 대리인주민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입찰유의서 상 증빙자료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서식3> 참조 밀봉 제출
제안서(A4지 3공바인더 사용)	각 5부	추가사항 : 전자파일 제출
요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최근 3개년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건당1부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서식4> 참조
보증서 등	1부	입찰 및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시
기타 당 협의회가 요구한 서류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요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 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용역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부가세 포함)는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봉합제출
- 비용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은 가격제안서에 명시
- 제안서 작성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및 담당자를 명시

3. 제안발표회

- 일 시 : 2025년 6월 2일(월) 오후 3시(잠정)
- 장 소 : 추후 통보
- 발표순서 : 추후 통보
- 발표시간 : 30분 이내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IV 평가 및 대상자 선정방법

1. 해외금융협력협의회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의·평가
2. 평가항목 및 배점

-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입찰서 및 제안설명회를 통해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실시하여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협상 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실시 직후 참가자의 입회하에 가격평가 진행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수행능력부문”의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평가항목		등급별점수				평가지표
		A	B	C	D	
기술 능력 평가 (80점)	계획 (20점)	10	8	6	4	·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
		10	8	6	4	· 계획 및 일정 수립의 적정성
	수행능력 (30점)	10	8	6	4	· 입찰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 · 입찰기관 조직구성 및 대외지명도 등
		10	8	6	4	· 연구책임자 외 참여인력의 경험 및 전문성
		10	8	6	4	· 연구책임자의 유사 연구용역 수행 및 관리실적
	추진 (15점)	10	8	6	4	· 용역 범위의 충실성
		5	4	3	2	·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관리 (15점)	5	4	3	2	· 용역 관리방안 (정보제공 등 협의회와의 협력방안 등)
		5	4	3	2	· 사후관리 방안
		5	4	3	2	· 추가제안 내용의 우수성 및 활용가능성
입찰가격평가(20점)					· 평점산식에 의해 계산	
합 계					-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1.3.19.)”에 의함.

V 주요 연구내용

-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을 분담하고 이를 모듈형으로 설계하여 수원국에 실제로 필요한 금융수단을 효과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금융 수출 전략 마련
- 정책금융 수단 간 기능 연계 가능성과 수요 기반의 정책금융 수출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해금협 회원기관의 해외협력 전략 수립
 - 자세한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위탁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참고

VI 기타 유의사항

- 위탁연구용역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 및 동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이나 용역결과에 포함된 자료는 본 용역 이외의 사용을 금지함.
- 협의회의 사유로 인하여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상의 세부내용(제안설명회 PT 내용 포함)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

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하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 작성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내용중 “~를(제공)할 수도 있다”, “~이 (사용)가능하다”, “~를 고려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조자료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확인수단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수행기관은 용역수행 후 협의회가 지정하는 부수의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결과보고서의 전자파일 포함)
- 문의 :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02-3705-6307)

2025. 5.

해외금융협력협의회

VII 참고자료

1. 제안서 작성시 포함내역

작성항목	작성내용
I.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 용역사업목표 설정 및 필요성 등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내용 적정성, 전문성, 차별성 등
3. 기대효과	■ 기대효과, 발전방향, 활용방안 등
II.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사업체 현황(조직, 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및 연혁 등
2. 유사용역 실적	■ 금융회사, 공공금융기관, 정부 등으로부터 금융정책, 금융산업, 민간 및 공공금융회사(기관) 경영 관련 4,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 수행
III. 용역수행계획	
1. 용역수행 계획	■ 구체적 내용, 범위, 과제수행 계획 등
2. 용역수행 방법	■ 금번 용역의 접근방법론과 방향(분석도구) 제시 ■ 기타 용역수행방법과 관련한 특징 또는 장점 등
3.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과 구체적 업무분장
4. 투입인력 현황	■ 참여인력 규모, 인원별 직위 및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 ■ 연구용역 참여 인력 이력사항은 별도 작성·제출
IV. 사업관리방안	
1. 추진일정	■ 단계별 추진일정 및 프로젝트 관리방안
2. 진척도 관리방안	■ 최종보고서에 담길 산출물의 내용 정의
3. 사후관리	■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V. 제안가격 및 산출내역	■ 제안요청서《서식3》참조, 제안서와 분리 제출
VI.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추가 기술이 필요한 내용 (기밀보안,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 등)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S/W : A4용지에 한글, 파워포인트 등 자율적으로 사용
- 제안서 내용중 I. 제안개요, III. 용역수행계획, IV. 사업관리방안은 상기 구성내용을 참조, 지정목차 순으로 빠짐없이 작성하되 분량은 핵심 내용 위주로 20페이지 이내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항목, 방법, 연구내용 등에 대해 추가 제안 가능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목차를 그대로 두고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3.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begin{aligned} \text{평가점수} = & \text{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 2 \times \frac{(\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end{aligned}$$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VII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이라 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리와 책임) 협의회는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관련 제반절차를 진행한다.

제4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당 협의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3. 가격제안서(소정서식)

4. 제안요청서
5. 입찰유의서
6.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7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당 협의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입찰보증금)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협의회에 귀속된다.
-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현금납부의 경우)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9조(입찰참가)

-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나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세증명 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등기 임원인 경우)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0조(입찰서류의 작성)

- ① 입찰서류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 ②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④ 가격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 ⑤ 가격제안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11조(가격제안서의 제출)

- ① 입찰자는 가격제안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권을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협의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협의회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 ① 당 협의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기로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① 당 협의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협의회는 제안서 평가가 끝난 직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봉함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점수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② 협상순위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제18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17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의회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협상절차)

- ① 협의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협의회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③ 협의회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0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의회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가격의 협상)

-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또는 입찰공고에 제시된 추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② 협의회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제22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협상결과의 통보) 협의회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 체결 및 이행)

- ① 협상완료시 낙찰자는 협의회로부터 협상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③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23조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2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협의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6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요청 및 협의회의 허락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7조(계약보증금)

①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의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여야 하며, 피보증인은 협의회로 한다.

③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협의회에 귀속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협의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식3>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제 안 기 관	
용 역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제 안 금 액	금 원정(₩)

구 분	금 액	비 고
인건비		
경비 등		
합 계		
제안금액(부가세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2025년 월 일

입찰자 : (인)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귀중

청렴계약 이행각서

귀 협의회와 당사()가 2025년 월 일자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패키지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 협의회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귀 협의회 임직원으로 하여금 임직원행동강령 등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입찰 등)참가 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손해배상 등 귀 협의회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가 없을 것임을 확인하며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귀중